

〈종합토론〉

종합토론

參席者：權泰峻(서울大)	具然昌(慶熙大)	金道昶(辯護士)
金東熙(서울大)	金安濟(서울大)	金致善(서울大)
盧明瀟(韓國外大)	朴鍾聲(檀國大)	襄載湜(서울大)
徐元宇(서울大)	宋相現(서울大)	趙柄倫(明知大)
池植日(서울大講師)	崔大權(서울大)	崔載勳(釜山大)
韓相範(東國大)	西原道雄(日本, 神戶大)	

時間：1980. 10. 19 午前 10:00~12:00

場所：新羅호텔

襄載湜：어제 수고들 많이 해 주시고, 오늘은 일요일이고 야외로 나가고 싶은 쾌적한 가을 날씨의 좋은 계절인데 이렇게 나오시라고 해서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모임은 어제 각 분과에서 말씀하신 것을 整理한다는 意味가 있습니다. 英國의 M.B. Pescod 教授는 出國 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못 하셨지만, 이번에 초청강사로 오신 Nishihara 教授께서 언어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와 주셨고, 金致善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學長과 金道昶 博士께서도 참석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綜合討論의 議長은 權泰峻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 院長께서 맡아주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權泰峻 院長님 司會로 綜合討論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司會者：오늘 綜合討論은 어제 각 분과에서 發表되고 討論된 것을 그 분과의 司會者께서 간략히 報告해 주시고, 그 報告를 中心으로 全體의 綜合을 하는 式으로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의 4개의 分科討論은 첫째 分科가 環境權, 둘째 分科가 環境公害의 規制, 셋째 分科가 環境公害에 대한 救濟, 넷째 分科가 國際法上的 環境公害의

問題를 主題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分科부터 報告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第1분과 부터 第4분과까지 간략한 分科討論要旨 報告가 있었음—

司會者：제가 環境問題會議 또는 環境法會議에서 종종 司會를 봄니다만 討論을 한 두개의 主題로 集約시키기 어려운데, 이것은 環境問題의 性質 自體가 그래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分科討論의 報告를 들으니까 하나의 脈絡은 있는 것 같고, 이것으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提示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關聯하여 제가 지난 2,3년간 環境教育에 관한 U.N.關係會議를 다녀보았는데, 거기서도 지금 이會議에서 論議되는 것과 비슷한 것이 論議가 됩니다. 即 環境教育은 環境科目이란 특별한 과목을 設定해서가 아니라 모든 科目을 통하여 環境問題를 다룸으로써 廣範하고 包括的인 接近方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主張과, 모든 分野를 통해 環境問題를 다루어야 하지만 특별히 環境科目을 두지 않으면 教育의 效果가 없다는 教育學者들의 主張이 對立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아직 解決되고 있지 않은데, 오늘의 報告를 들으면

서 같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말해, 환경권으로 부터의惠澤의內實을 생각하면 包括적이고 廣範圍하고 綜合적인 認識·接近이 必要的 反面, 그 惠澤을 具體적으로 享受하는 方法, 救濟를 받을 方法, 規制方法에 있어서는 극히 具體적이고 個別的인 方法이 必要하고 그렇지 못 할 경우 그 惠澤이 有名無實해 지거나 一般的·抽象적인 것이 될 可能性이 있다는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가지 要請이 各 分科의 報告에 반영되고 있는데,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討論을 한다면 새로 생긴 環境權과 既存의 法律制度 내지 法技術과의 調和를 위한 討論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報告를 토대로 해서 自由討論으로 意見を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相範: 憲法學의 立場에서는 새 憲法에서 環境權이 設定되기 前에는 解釋論을 통하여 憲法의 基本條文中에서 環境權의 根據를 찾아내려는 노력이 있었고, 明文規定이 있게 된 後에는 어떻게 이것을 적절히 解釋해서 內的 實效성을 기할 것이냐가 問題가 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1972年 改正憲法은 立法義務만 지웠지 人權으로서의 環境權을 認定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憲法은 環境權을 人權으로서 認定하되 國家와 國民은 環境保護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規定함으로써 立法에 대한 具體的 指針을 明示하지 않으면서도 人權으로서의 環境權을 規定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解釋上 環境權이 人權으로서 公認된 것은 分明하고, 이런 根據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立法方針이나 行政의 指針으로서도 보다 確實해졌고, 따라서 公法의 救濟나 私法의 救濟 그리고 事前豫方면에서 憲法解釋論이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問題意識인 것입니다.

또한 環境權이 人權으로서 規定되었다 하

더라도 下位法에서 그 實效성을 발휘하지 못 한다면 看板規定밖에 될 수 없는데, 우리나라의 環境問題는 經濟成長이나 企業의 利益과 直接 衝突이 되므로 쉬운 問題가 아닙니다. 이런 觀點에서 公法의 救濟, 私法의 救濟에 따르는 要素사항을 여러분들께서 좀 더 具體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徐元宇: 저도 結論적으로는 韓相範 教授님과 같은 입장인데, 사실 憲法에 環境權條項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이 國民들에게 어느 정도의 效果를 미칠 것이냐에 대해 지나치게 기대할 것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過去에 이런 條項이 없을 때에도 人權條項 등의 解釋을 통해 環境保護가 可能했고, 環境權 規定을 가진 나라도 世界的으로 보면 例外的이고 그 경우에도 實質적으로는 우리보다 環境에 대한 規制가 더 잘 實施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環境權條項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겠지만, 問題는 앞으로의 具體적인 立法과 環境問題에 대한 政府의 積極적인 자세를 期待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제가 여기서 強調하고 싶은 것은 司法院에 대한 期待입니다. 法의 發展이 立法活動을 통해서 可能하기도 하지만 立法過程에는 利害關係나 政策的인 理由가 介入되기 때문에 社會적인 問題에 대해 法이 따라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法解釋을 통한 法創造의 機能이 期待되는데, 過去 우리나라의 法院이 이런 期待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이 事實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憲法에 環境權條項이 新設되었으니까, 具體적인 立法이 없더라도 憲法의 理念에 따라 司法院가 具體적인 事件에 있어서 法의 解釋을 통해 環境權을 實質적으로 保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 이러한 期待가 司法院에 반영되어서 앞으로의 環境問題에 대해 司法院가 좀 더 積極적으로 活動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所望입니다.

結論적으로 우리의 現實을 볼 때 環境權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非現實인 것이고, 그렇다고 環境權을 너무 消極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止揚해야 할 것인데, 이 問題를 어떻게 調和할 것이냐 하는 것이 環境問題를 法的인 觀點에서 다룰 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具然昌 : 저는 이번 學術會議가 時期的으로도 意義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먼저 微細한 小題目에 있어서 異議를 提起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環境公害’라는 用語의 使用이 再檢討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1975년을 기점으로 ‘公害’라는 말을 쓰지 않고 ‘環境汚染’이란 말을 쓰고 있고, 1977년에 制定된 環境保全法에서는 ‘公害’라는 말이 완전히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會議가 네 개의 主題로 된 것은 참 잘 됐다고 봅니다. 環境問題에 대해서는 모든 法分野에서 接近하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는 H. Nipperdey의 經濟法 對象 分類方法에 따라 環境憲法, 環境行政法, 環境私法, 環境刑法, 環境訴訟法, 國際環境法의 여섯가지로 나눕니다. 이렇게 볼 때 訴訟法 分野는 여기저기에 포함되어 있고, 이번 會議에서 빠진 것이 環境刑法 分野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研究나 學術會議를 할 때에는 이 여섯가지 側面에서 接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內實을 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環境權에 관한 것인데 이것이 憲法에 들어오게 된 것은 必然이라고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그 規定 自體가 프로그램적인 實質의이건 70年代 以後에 憲法을 改正할 기회가 있었던 國家에서는 모두 環境權 내지 環境에 대한 規定을 집어 넣어서 現在 38個國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憲法 規定 속에 環境權과 環境保全義務가 立法化 된다고 해서 既存의 環境對策이 하루아침에 바뀌어 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것이 하나의 目標을 提示하고 그 目標을 향해 한걸음씩 나아가는 하나의 意志의 表現으로서의 意味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環境問題에서 그 解決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國民의 意識인데, 環境權이 憲法에 規定됨으로써 그것이 住民運動의 發動 根據가 되고, 이 住民意識·國民意識이 결국 行政·司法을 밀어 붙일 것이라는 데에 기대를 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憲法에 環境權에 관한 明文 規定이 없더라도 憲法 前文이나 第8條, 第30條 등에서 끌어낼 수가 있겠지만, 明文 規定이 있으니가 發言權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點에 意義가 있다고 봅니다.

盧明濤 : 國際法上 環境權에 관한 論議는 1948年의 人權宣言이나 그 후의 人權規約, 구라과人權條約 혹은 中南美人權條約 등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으나, 1952年 스톡홀름에서 開催된 人間環境會議에서 나온 人間環境宣言에는 완전히 環境權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國際法에서도 環境權에 대한 論議가 具體化되었는데, 다만 이것은 法的 拘束力을 갖지 못하고 단순한 希望을 表示한 하나의 宣言에 不過합니다. 이러한 點에서 憲法上의 環境權과 比較하여 強度가 현저히 약한 發展이 되고 있다는 것을 첨부해 드립니다.

襄載湜 : 이 세미나를 주관한 사람의 입장에서 具教授가 지적한 것을 앞으로 忠告로서 有益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環境法이라는 것이 體系化되어 급속히 發展하고 있지만, 아직 一般人들에게는 環境法의 概念조차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또 이번 討論에서 들어보았지만 專門家들 사이에서도 概念 定立 自體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計劃案이 環境保全法에 局限된 것이라는 느낌이 있어서 이것을 保全·管理·規制라는 넓은 意味에서 다루어 보자는 생각으

로 題目을 ‘環境과 法’이라고 크게 잡았읍니다.

그리고 具教授께서 公害라는 用語의 使用問題와 環境刑法이 빠졌음을 指摘하셨는데, 이번에 公害라는 用語를 使用한 것은 이 公害라는 用語가 一般的으로 너무나도 넓게 쓰이고 있고, 또 延世大에는 公害問題研究所라는 이름의 機關도 있어서 公害라는 概念이 一般化되어 있기 때문이었는데 앞으로 더 檢討를 해서 보다 세련된 用語를 使用하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環境刑法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 ‘環境公害의 規制’中에는 당연히 刑法的인 規制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 나름대로

로는 第2主題를 굉장히 넓게 봤읍니다만, 발표하신 徐元宇 教授께서 行政法을 하신 분이어서 주로 行政法的인 規制에 局限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따로 刑法的 側面을 두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環境關係의 特別刑法이 整備가 되면 이것 역시 따로 나누어 보아야 마땅하리라고 생각하며 이 점도 參考하겠읍니다.

司會者: 이번 ‘環境과 法’ 學術會議가 자극이 되어 學界의 왕성한 研究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우리나라 環境問題의 法的 解決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하실 말씀이 많이 있겠지만 이것으로 종합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